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 -1267호

「항공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기정비 산업 지원을 위한 항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9688호, 2023. 8. 16)됨에 따라 법 제75조제6항에 따라 지원사업 위탁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공사업법 제75조제6항에 따라 항공기정비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위탁 관련 조항을 신설(안 제33조제6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0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36호

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nkkim70@korea.kr

- 팩스 : 044-201-5632(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전화 044 - 201 - 4225, 팩스 044-201-5632)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